

Vol. 9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3. 3. 6.

■ 정책동향

-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방안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마련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
-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시행
-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인하 및 보장 강화
-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대상자 '경북 울진군' 선정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 '농촌치유'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연계로 촉진
- 양봉산업 발전 위해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 바이오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전망
- 이슈 브리프 2 |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3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EU의 대응 방안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량·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지속가능한 농업 확립(4)
- 언론 동향 |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주요 동향(4)

■ 통계·조사

-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정책동향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2.27.)

□ 개요

- [농식품부, 2023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2023.2.27.] 농식품부는 2023년 2월 27일,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 를 개최,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

Ⅰ 규제혁신 과제(총 40개) Ⅰ

과제명	과제명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3건)	4. 가축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 횟수 제한 해제
1. 전락작물 대상에 가루쌀을 포함하여 「전락작물직불제」 도입	5. 비의도적 사유로 농약 검출 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행정처분 완화
2. 가루쌀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의 판매종료시점 연장 등 완화	6.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선
3. 종지업 등록 시설·장비 기준 완화	7.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의 국고 보조율 상향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8건)	8.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자격을 임대차 과원 까지 확대
1.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9. 관광농원 개발 신규농업법인을 위해 조건부 자금지원
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등 도매유통 혁신	10.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용도 추가
3. 도매시장법인 경영사업 확대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5건)
4. ‘첨단투자지구’ 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추가	1. 노후불량주택개량비용 및 농촌 집고쳐주기사업 지원 단가 현실화
5.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비인증원료 허용 범위 완화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소규모 캠핑업(야영장업) 허용
6. 수출통합조직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업체 출자제한 규정 완화	3. 펫푸드 분류·표시 제도 정비방안 마련
7. 수출지원 범위 확대 및 수출업체 편의성 제고	4. 반려동물사료 수입 시 벌크 수입 가능하도록 포장 범위 확대

㉔ 정책동향

과제명	과제명
8.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음료·물류시설 용지비율 확대	5.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
㉓ 산업 융복합 및 新시장 조성(5건)	㉖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9건)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제정	1.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2.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2.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 종류 확대	3. 농산물이력추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
3. 국가식품클러스터 OEM 생산품의 혼합 판매 및 음료 제품 판매 허용	4. 비의도적인 농약오염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심사 요건 구체화
4. 전문공사업체도 임대형스마트팜 시공에 참여 허용	5. 매립지(간척지) 등 매각대금 납부 시 분할납부 허용
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10건)	6. 매립지(간척지) 등 임대 시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개선
1.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농한기 활용 농외 근로 허용	7.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용도 확대
2. 지역농협 복수조합원 대상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추가	8.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 위탁범위의 제한 해제
3.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융자 요건 개선	9. 축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방식 개선

㉕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과제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3건)

- ①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대상에 가루쌀을 포함하여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중요 작물*의 재배 확대가 필요 ※ (동계) 조사료, 밀, 맥류 등 (하계) 가루쌀, 콩, 조사료 등 ■ (개선방안) 동계작물에만 지급하던 논활용 직불금을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여 중요 하계작물 재배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작물 재배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2023 예산 반영 및 사업지침 수립·시달, 2023.1분기) ■ (기대효과)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수입대체 효과

- ② 가루쌀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의 판매종료시점 연장, 보험금 지급조건 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가루쌀 재배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내 기타품목에 가루쌀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장내용으로 인해 가입 저조 ■ (개선방안) 가루쌀 생육시기(이앙적기 등)에 맞춰 판매 종료시점을 연장하고, 수확 불능 및 경작 불능 관련 보험금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2023.2분기) ■ (기대효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보험수요 충족 및 농업경영 리스크 감소
--

㉔ 정책동향

- ③ **종자업 등록 시설·장비 기준 완화**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자산업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종자 생산·판매 시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종자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존재▪ (개선방안)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개정(2023.4분기)하여 작물 종류별로 종자의 육성·증식·가공 등에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정하고, 적정 기준 마련▪ (기대효과) 종자업체들의 편의성 제고 및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
--

2.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8건)

- ①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설립 및 경영 참여 제한*<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출자액 90%까지 완화되었으나 설립주체는 농업인, 농업생산자 단체로 제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외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농업인의 참여 제한▪ (개선방안)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및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3.4분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에 참여하도록 개정 /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농업법인 정관례(고시) 개정▪ (기대효과)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업계 외부의 자본력, 기술력 도입 촉진

- ②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등 도매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가칭)**」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 정착<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설구역 이외에서나 제3자의 판매가 제한되어 경매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장 혼잡 등 문제 발생 → 농산물의 품질 저하 및 유통비용 증가▪ (개선방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하여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범위의 전국단위 확대를 통한 도매유통 혁신 추진(2023.4분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온라인 도매 플랫폼 구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등▪ (기대효과) 도매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거래·물류 효율화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 ③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경영사업 확대**

㉔ 정책동향

- **(현황)**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나, '선별·포장·가공·저장·수출입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경영이 가능*
 - ※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상품화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 확대 요구
-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4분기)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출하자·구매자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경영사업 유형화 및 확대
 - (출하자 지원) 종자 개발, 농업인 교육, 포장재 지원 등, (구매자 지원) 물류지원 서비스, 소상공인 소포장·상품화 지원 등
- **(기대효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소득향상과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안정화 도모

- **④ 「산업집적법」 상 '첨단투자지구' 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

- **(현황)**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제약
- **(개선방안)**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중요 산업시설 기준에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 를 추가하는 「초지법 시행령」 개정(2023.2분기)
- **(기대효과)** 초지법상 부담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

- **⑤ 무농약원료 허용범위를 완화**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 **(현황)**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은 일반원료를 5% 이내에서 허용하나,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은 일반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 ① 무농약농산물(50% 이상), ② 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③ 유기식품, ④ 첨가물·가공보조제(5% 이내)
-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무농약원료 가공식품도 인증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원료를 5%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2023.2분기)
- **(기대효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 **⑥ 수출통합조직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업체 출자제한 규정 완화

- **(현황)** 수출통합조직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참여하나, 수출업체의 출자 한도 및 의결권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의견 반영에 한계
 - ※ ① 무농약농산물(50% 이상), ② 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③ 유기식품, ④ 첨가물·가공보조제(5% 이내)
- **(개선방안)** 수출업체도 통합조직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출자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 제한 규정 완화(2023.1분기)
- **(기대효과)** 수출업체의 추가 지분참여에 따른 의결권 확대로 수출통합조직의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도모

- **⑦ 수출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한도** 등을 완화하여 수출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출업체 편의성 제고

㉔ 정책동향

- **(현황)** 국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자격제한, 지원한도 및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출업체 애로*
 - ※ 수출입 실적, 세부 항목별 지원 한도, 사업공고 시기(1~4월), 재무제표 등 공통제출 서류 등 부담
- **(개선방안)** 수출업체의 역량, 사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 지원기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세부 추진계획 개선(2023.1분기)
- **(기대효과)** 수출업체 현장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수요가 높은 식음료·물류시설 용지비율 확대로 잔여 용지 활용도 제고

-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물류업과 식음료제조업은 분양율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있음.
 - ※ 분양현황(2022.6월, 71.8%): 물류 100%, 식음료 96, 연관업종 48, 음료 14 등
- **(개선방안)** 연관업종 및 음료제조 용지를 축소하고 식음료·물류 시설 용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개정 고시 완료
- **(기대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잔여 부지의 입주활성화*(현 분양율 72.4%)
 - ※ 건식무역, 제이드 시스템 투자유치, ㈜팔도, 서주제과 등 중견기업들 투자의향

3. 산업 융복합 및 新시장 조성(5건)

○ 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농식품 그린바이오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

- **(현황)**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시장으로 대두
 - ※ (주요 분야)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 포함
- **(개선방안)**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 등 추진으로 농식품 분야의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산업화 촉진)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2027년까지 1천억 원 이상 확대하고, 주요 분야를 거점으로 기업의 상품화 지원
 - (기술·인력) 디지털 육종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확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생태계 조성)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2023.4분기)
- **(기대효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수출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에 기여

○ ②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기후·식량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푸드테크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㉔ 정책동향

- **(현황)**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022.12월)에 따라 푸드테크 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개선방안)** 푸드테크의 정의·범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지원 근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인증(또는 지정), 혁신 특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2023.4분기)
- **(기대효과)**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신식품** 및 관련 장비 수출 확대,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 확보**

○ ③ 가축(기타동물)에 포함되는 **곤충 범위 확대**(14종 → 16)로 **곤충산업 육성**

- **(현황)** 「축산법」상 곤충(14종*)은 2019년 고시 개정을 통해 가축(기타동물)에 편입되었으나 대부분 식용, 학습용 곤충으로 지정되어 사료용 곤충은 2종에 불과
 -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빨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개선방안)**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중 곤충 범위에 아메리카 동애등에, 벼 메뚜기를 포함되도록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고시 개정(2023.2분기)
- **(기대효과)** 사료용 곤충기업 양성 및 농가 소득 증대로 **곤충산업 성장에 기여***
 - ※ 곤충사육농가에 취득세·지방소득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혜택 부여

○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 생산품과 **OEM 생산품의 판매** 및 **입주기업의 커피 등 음료제품 판매 허용**

- **(현황)** 산업단지 내 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부대시설 내 제품판매장)가 가능하므로 OEM 생산제품을 묶어(혼합)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밖 별도 사무실에서 판매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개선방안)** 산업단지 내 OEM 제조 조건*을 충족할 경우 OEM 생산제품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2023.1분기)을 통한 규정 명확화 추진
 - ※ ① 생산제품 입주업체 직접 기획, ② 입주업체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입주업체 명의로 제조, ④ 입주업체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 **(기대효과)** 별도 사무실 운영비, 물류비 등 추가 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현황)** 커피(원두) 생산기업에서 구매자, 방문객들이 커피(음료) 섭취를 희망하더라도 시음 외에는 유료판매가 불가
- **(개선방안)**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여 비알콜 음료(커피 등) 판매 허용(2023.1분기)
- **(기대효과)** 클러스터 내 자체 생산품과 함께 다양한 음료 판매를 허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식품 문화·관광·체험·홍보 등이 융합된 **식품문화복합공간** 창출로 **산단 및 지역 활성화**

○ ⑤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자 이외에 **전문공사업체(금속·창호·온실시공업 등)**도 **임대형스마트팜 시공에 참여 허용**

㉔ 정책동향

- **(현황)**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장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온실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건설업으로 제한 발주*
 - ※ 현장에서는 공종별 전문업체에 독립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절한 단가책정 및 품질확보에 유리하다는 의견
- **(개선방안)** 조성업체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금속·창호·온실공사업)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
- **(기대효과)** 스마트팜 온실공사 시설 사양 제고 및 품질확보에 기여

4.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10건)

○ 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농한기 활용 농외 근로 허용**

- **(현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구입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
- **(개선방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을 개정하여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허용(2023.1분기)
- **(기대효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도모

○ ② 지역농협 복수조합원 대상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를 추가하여 실질적 영농 종사 고령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 유지

- **(현황)**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고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는 ‘가족원으로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자’ 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가입 불가
- **(개선방안)** 농촌 고령화를 감안,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가족원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자’ 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2023.1분기)
-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 유지

○ ③ 농촌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용자 요건 개선**

- **(현황)** 매년 약 6천 세대에 농촌주택개량용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청년층의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은 상황
- **(개선방안)** 농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용자지원 시 청년은 기준 금리에 비해 인하된 금리(2% →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2023.1분기)
- **(기대효과)**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 인력의 정착 지원에 기여

○ ④ **가축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복수의 소규모 농장 운영 가입자에게도 보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㉔ 정책동향

- **(현황)** 보험료의 지방비 지원 횟수를 농업인·법인당 1회로 제한**
※ 국비지원 시 농업인·법인당 보험료 지원횟수 제한 없음.
- **(개선방안)**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상 지방비 1회 지원기준 삭제(2023.1분기)
- **(기대효과)** 복수의 소규모 농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가입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의 형평성 제고 및 재해보장 강화

○ ⑤ 비의도적 사유로 농약 검출 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행정처분 완화

- **(현황)**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은 원료 농축산물을 인증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는 원료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농약 검출 시에도 인증취소까지 가능
- **(개선방안)** 비의도적인 이유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2023.2분기)**
※ (현행) 1차 및 2차 위반: 시정조치, 3차: 인증취소 → (개정) 시정조치(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현행과 같이 1차에 인증취소 처분)
-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⑥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선

- **(현황)** 살처분 농가의 피해보상 현실화 요구 지속
- **(개선방안)** 방역기준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및 최소 지급 비율(20%) 설정, 예방 살처분 농가에 유리한 보상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2023.2분기)
- **(기대효과)**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유도

○ ⑦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의 국고 보조율 상향(20% → 25)

- **(현황)**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분야는 유가 상승에 민감하며, 평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면세유가 시설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방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25%로 상향 조정(2023.1분기)
- **(기대효과)**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확대

○ ⑧ 고령·은퇴농의 과원 활용을 위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자격을 임대차 과원까지 확대

- **(현황)**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과원) 소유 또는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농협·농업법인 등으로 지원 자격 제한
- **(개선방안)** 경영주가 임대를 희망하거나 방치된 과원을 임차하여 꽃가루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대상에 임대차 과원 포함
- **(기대효과)** 사업 수요 확대, 신뢰할 수 있는 국산 꽃가루 공급에 기여

㉔ 정책동향

- ⑨ 관광농원 개발을 희망하는 신규농업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조건부 자금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를 요구하여 관광농원 개발을 희망하는 신규농업법인은 해당 자금 활용 곤란* ※ 신규사업자는 시설자금이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없는 신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 (개선방안)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조건부 자금지원 추진(2023.1분기)▪ (기대효과)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기회 부여

- ⑩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항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지역 주민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 관련 시설개선, 장비구입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서비스 제공 단절 및 서비스 질 저하 발생▪ (개선방안)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항목 신설(2023.4분기)▪ (기대효과) 지역 서비스공동체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서비스 지속 지원 가능
--

5.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5건)

- ① 농촌 주택 특성,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노후불량주택개량 비용 및 농촌집고쳐주기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보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을 지원 중이나, 주택 정비 단가가 급등하여 자부담 비용 상승 및 사업 포기 증가▪ (개선방안) 건설시장 동향을 반영한 사업 단가* 현실화 추진(2023.2분기) ※ (슬레이트지붕 개량) 0.9천만 원 → 1.1천만 원, (집수리) 0.8천만 원 → 1천만 원▪ (기대효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집수리 등 주택정비 활성화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집고쳐주기사업의 경우 중보수 이상(욕실, 주방 등) 집수리 요구가 많으나, 공사비 지원 부족으로 수혜자 맞춤형 지원 미흡▪ (개선방안) 농촌 취약계층의 중보수 이상 집수리 요구와 농촌주택 특성,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평균 지원 단가 상향(500만 원 → 650, 2023.1분기)▪ (기대효과)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②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소규모 캠핑업(야영장업) 허용

㉔ 정책동향

- **(현황)** 체험마을은 아영장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입지·편의 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문제 등으로 아영장업 등록이 어려움.
- **(개선방안)** 체험휴양마을 체험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소규모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개선 협의(문화체육관광부, 2023.4분기)
-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체험휴양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관광 상품과 결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③ 소비자 중심의 펫푸드 분류·표시 제도 정비방안 마련

- **(현황)** 펫푸드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료관리법상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분류·관리 체계로는 수요 대응에 역부족
- **(개선방안)** 원료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소비 중심의 용도별 목적에 따른 분류체계를 마련* 하는 등 펫푸드 표시·광고 규정 보완(2023.4분기)
※ 소비자의 이해가 쉬운 원료 명칭으로 개정, 원료의 함량 표시 등
- **(기대효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펫푸드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

○ ④ 반려동물사료 수입 시 벌크 수입이 가능하도록 포장 상태 범위 확대

- **(현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위험 국가(36개국)산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쇠고기 등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 포장' 상태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수출국이 검역증명서를 통해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미포함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벌크포장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2023.4분기)
- **(기대효과)** 수입업체 현장애로 해소 및 수입업체 비용 경감(약 80% 이상)*
※ 벌크포장 수입단가 1~3\$/kg, 소포장 수입단가 8~14\$/kg

○ 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 및 진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

- **(현황)**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나,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2023.3분기)
- **(기대효과)**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 제고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등 보장

6.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9건)

○ 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 절차 개선

㉔ 정책동향

- **(현황)**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대상 자격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 이외의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 납부하도록 규정
- **(개선방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2023.2분기)하여 매립지 등 매각대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기대효과)**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매립지 매입자(지자체 등)의 재정부담 경감

○ ⑥ 농어촌관광휴양, 농업교육훈련 사업도 매립지(간척지) 등 임대 시 임대료 납부 시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현황)** 매립지 등의 임대료는 계약일 90일 내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작물 경작, 농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한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농어촌관광휴양, 농업교육훈련 사업 등의 임대료 납부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대상에 추가(시행규칙 개정, 2023.2분기)
- **(기대효과)** 관련 사업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⑦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을 양파 육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현황)** 8월 중순~11월 상순 동안 양파 정식을 위한 육묘를 실시하나, 농업인이 육묘 용도로 활용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고추 수확 종료 후 양파 육묘 용도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의 사용범위 확대
- **(기대효과)** 고추 및 양파 재배 농업인의 편의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

○ ⑧ 재해보험 현장 확인·심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 위탁범위의 제한 해제

- **(현황)** 손해사정사(손해평가 업무, 보험가입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 및 손해평가사(손해평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상이
- **(개선방안)** 손해평가사가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손해평가로 한정 하는 규정을 삭제(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3.4분기)
- **(기대효과)** 보험가입 농지 현장 확인·심사 투입인력을 확대하여 보험 운영의 안정성 및 정확성 제고

○ ⑨ 축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불편 해소

- **(현황)** 기존 축산업 허가자가 새로 확보한 축사에 축산업 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축산업 신규 허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여 불편 초래
- **(개선방안)** 이미 축산업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산업 신규허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신규 허가 교육을 면제(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2023.4분기)
- **(기대효과)** 축산농가에 불필요한 추가 교육 이수 의무를 면제하여 불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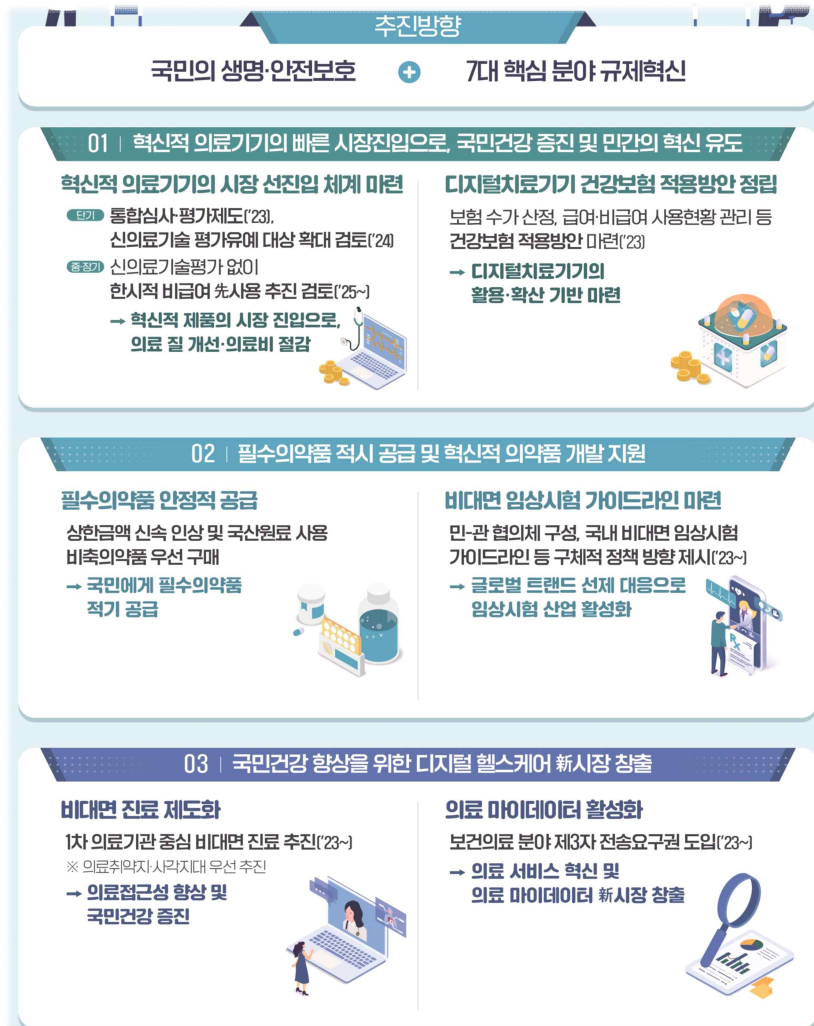
◆ 총괄 동향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마련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관계부처 합동(2023.3.2.)

-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2023.3.2.] 정부는 2023년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신산업 핵심 분야인 ‘바이오 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논의
- (주요 내용) △바이오헬스…비대면 진료 제도화, 환자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허용 등, △로봇…보도통행 연내 허용, 수중청소로봇으로 유출기름 회수 가능 등,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메타버스 장비 경찰·소방 업무 활용 허용 등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 정책동향

「로봇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로봇 : 스스로 인식(sense)하고 제어(control)하여 자율적으로 작동(act)하는 기계장치(S/W 포함)

01 로봇은 新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핵심분야



02 핵심분야



03 로드맵 주요내용

모빌리티 9건	협업/보조 9건
<p>보도/공원 통행 로봇을 '차·마'에서 제외(경찰청, '23) 공원 내 출입하는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국토부, '23)</p> <p>물류서비스·순찰로봇·옥외광고 허용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추진(국토부, '23) 배달로봇을 이용한 옥외광고 허용 추진(행안부, '24)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경찰청, '24)</p>	<p>의료로봇 보조금 확대 재활로봇 수가화(복지부, '23), 돌봄로봇 공적급여화(복지부, '24)</p> <p>농업용 로봇·조리서빙로봇 활용 촉진 신기술 농업기계 활용을 위한 검정기준 마련(농식품부, '23)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 활용 반영 추진(식약처, '23)</p>
세이프티 8건	인프라 25건
<p>수중청소 로봇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개선(해수부·해경청, '24)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 활용기준 마련(해수부·해경청, '25)</p> <p>소화로봇 로봇의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소방청, '24)</p>	<p>로봇의 공공조달 확대 로봇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조달청, '23)</p> <p>로봇 국가기술자격 신설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고용부, '24)</p>

㉔ 정책동향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

자료 :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합동(2023.3.3.)

□ 개요

-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 발표, 2023.3.3.] 기획재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위원회를 개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

Ⅰ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 비전·목표·전략



㉔ 정책동향

□ 주요 내용

1.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 ① 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전문 연합회*(의료·학교 연합회 등)의 분야별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고,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
 - ※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성장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협의·조정
- ② 민간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기본법 간, 기본법-개별법 간)를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강화**
 - ※ 연합회의 상호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등, 상호거래 품목(제조품 → 서비스 상품) 다변화
 - ※※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관련 CSR 정보 페이지 운영 등 정보제공 강화
- ③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확대(2022년: 20개 → 2025년: 30)하고, 교육 주체 다양화(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등)를 추진

2.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규제 완화(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총자산의 50% 이상) 폐지 등),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 진출 지원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공급 제공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보 확보)
- ②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 ※ 상호부조 및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우수 운영사례 공유, 특화교육 과정 편성
 - ※※ 타 개별법 협동조합(예: 중기협, 신협 등) 법제 및 운영사례 등 연구하여 제도 개선 검토
- ③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 및 홍보*로 대국민 협동조합 공감대를 제고
 - ※ 매월 우수협동조합(“이달의 협동조합”)을 선정 → 인증패 수여, 보도자료 배포 등

3.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㉔ 정책동향

- ①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유도***
 - ※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現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확대, 연합회 주관 교육사업 신설, 연합회의 중간지원 기관으로 참여 유도 등
- ② **이중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로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력**을 **확대***
 - ※ (현재)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구성 → (개선) 개별법 협동조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수협 등의 참여 확대 검토
- ③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 협의회 개최** 등 **논의 채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개선**을 **지원***
 - ※ 2~3년 단위로 지원사업(각 부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진단·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처에 통보하여 부처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사업내용 조정·설계

4.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 ①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신뢰성 제고*** 및 **중간 지원기관 선정·운영 방식**을 **개선****
 - ※ 국가 행정정보(국세청·매출·기부금, 근로복지공단·근로자, 법원행정처·등기 정보 등) 연계로 공시자료의 신뢰성 제고 등
 - ※※ 지원기관 선정과정 개선(기존기관에 유리한 평가 기준 개선 등), 성과평가 강화(중간평가 도입 등)
- ② **협동조합 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를 **지속 추진**
 - ※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국세청 등)의 협동조합 관련 정보연계(기본법 개정안 기재위 계류 중)
 - ※※ 온라인화(신청·신고 등), 주요 유형별 협동조합(학교, 과학기술인 등) DB 구축·공유
- ③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정책방향 공유·조정***
 -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 원칙)로 정보 교류, 연대 강화
- ④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를 통해 **전문화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
 - ※ 중간지원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매년 2~3개 중간지원기관 선정하여 역량 강화), 연합회의 중간지원기관으로의 참여 유도, 지자체 시경센터와 역할 재구축(중복 업무 해소)
- ⑤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로 **협동조합 정보 신뢰성·정책 효과성**을 **제고**
 - ※ 미등기 협동조합 행정제재 부과(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실화, 미운영 협동조합 해산 관련 제도(해산간주제) 안내·교육으로 자발적 해산 또는 사업 재개 지원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합동(2023.3.2.)

-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3.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3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금일 회의에서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안건을 논의*

※ 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평가, ②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 계획, ③ 방한관광 동향 및 대응방안, ④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⑤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⑥ (서면) 주요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추진 전략 및 과제

【 비 전 】

우리 혁신기업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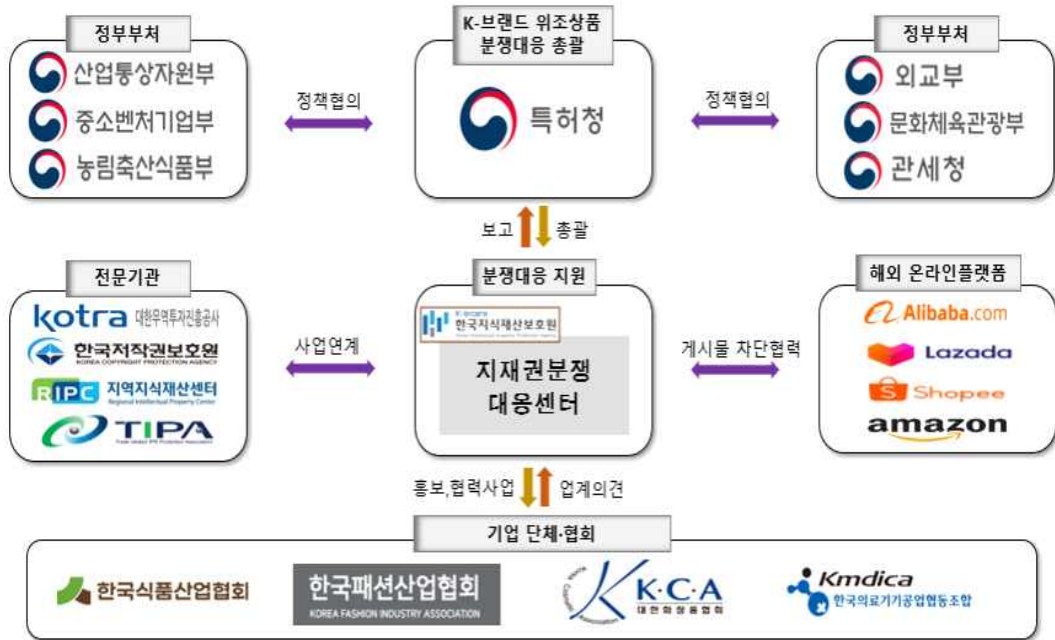
【 추진 전략 】

- ✓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강화
- ✓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 확대·고도화
- ✓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분야	주요 추진과제
1 사전 예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 구축 2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및 권리와 확대 3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강화
2 피해 구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역량을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확대 2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지원 신규 추진 3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세관·특사경 단속지원 강화
3 대응 기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신규 운영 2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침해피해 지원체계 확충 3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정보제공 법제화 4 국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㉔ 정책동향

- (추진체계) 특허청이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K-브랜드 분쟁 대응을 총괄하고,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통합·연계 제공



▣ 향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처(기관)
[전략 1] [사전예방]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강화		
①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 구축	2023~	특허청
②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및 권리화 확대	2023~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③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강화	2023~	기획재정부(조폐공사), 특허청
[전략 2] [피해구제]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 확대·고도화		
① 민간역량을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확대	2023~	특허청
② 해외 위조상품 반발업종 집중지원 신규 추진	2023~	특허청
③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세관·특사경 단속지원 강화	2023~	특허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전략 3] [대응기반] 위조상품 국내의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신규 운영	2023~	특허청
② 해외 현지 지재권 침해피해 지원체계 확충	2023~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특허청
③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법제화	계속	특허청
④ 국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2023~	특허청

㉔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2.27.)

□ 개요

-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시행, 2023.2.27.]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됨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 제정 법률 주요 내용 및 특징

- ①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명시,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가 대표적

┃ 농촌 특화지구 종류(7개) ┃

구분	주요 내용
농촌마을보호지구	• 농촌마을 주민 등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㉔ 정책동향

- 또한,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산업 연계성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도입, 그 밖에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도 포함
 -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
- ②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
-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체계가 도입
 -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기본방침이며,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은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
 - 시·군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 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그 지정 및 해제를 결정
- ③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시·군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 내용과 비율 등을 약속,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역별로 ① 농촌공간정비, ② 주거·정주여건, ③ 일자리·경제, ④ 사회·생활서비스 등 핵심 기능을 재생 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이행을 목표
 - 이 외에도,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공간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광역·기초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 중앙·광역·기초지원기관의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㉔ 정책동향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 농촌특화지구 개요

-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보호** 등을 위해 **농촌 특화지구 지정**
 - 주민제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가능** (제12-14조)
 - (**종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 (**운영**) 국토계획법상의 유사한 용도지구를 의제하여 건축물 설립 및 행위 제한을 적용(제14조)*
 - ※ 의제 대상: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지역민은 농촌 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 체결 가능(제22조)

□ 농촌협약제도 개요

- [개념] 2020년부터 **지방분권(지방이양)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시행
 -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 (**지원사업 예**)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공간정비(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헤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헤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선정·체결 현황**) (2020 선정·2021 체결) 12개 → (2021 선정·2022 체결) 20개 → (**2022 선정·2023 체결 예정**) 21개

㉔ 정책동향

▣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

선정시기	경기(3)	강원(4)	충북(6)	충남(7)	전북(7)	전남(9)	경북(9)	경남(8)
2020	이천	원주, 영월	영동, 괴산	홍성	임실, 순창	보성	상주	김해, 밀양
2021	안성	평창	제천, 음성	금산, 청양	김제, 진안, 무주	나주, 화순, 장흥, 강진	군위, 청도, 고령, 봉화	고성, 산청, 합천
2022	여주	양양	청주, 진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군산, 익산	순천, 구례, 해남, 함평	영주, 칠곡,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거창

- [참여 조건] ①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②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운영, ③ 지방이양된 사업(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 ※ 전략계획 수립 시 주요 분야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농촌다움(농촌환경, 농업유산, 생태·경관 등) 보전 등
 - ※※ 전담조직(시·군 전담부서), 농촌협약 위원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 [협약 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 / [협약 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 [협약 규모] 개소당 국비(대상사업) 기준 최대 300억 원+α(농촌공간정비사업)
 - ※ 지방비는 지원 사업별 매칭 비율(30~50%)에 따라 지자체에서 확보, 협약서에 포함 ⊕ 타 부처 사업, 농식품 분야 외 지자체 사업 등은 추가 확보(지자체) 시(활성화계획 포함) 연계 사업으로 분류, 협약서에 포함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3.2.)

- [농식품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2023.3.2.]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신청(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을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 (주요 내용) △신청 자격...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인 또는 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및 재배 품목(논·과수·채소 등) 등에 따라 ha당 최대 140만 원~최소 35만 원의 직불금을 2023년 12월 중 지급할 예정

▣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만 원/ha) ▣

인증단계	논	밭		지급기한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	140	130	5년
무농약	50	120	110	3년
유기지속	35	70	65	제한 없음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인하 및 보장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2.27.)

○ [농식품부, 2023년 3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와 제도 개선, 2023.2.27.]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2023년 3월부터 시행

- (주요 내용)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3.4% 인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 △보험 가입연령 확대*,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및 보장 강화 등 제도 개선 시행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연령 확대(일반 2·3형: 84세 → 87)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가입금액: 농기계가액) 기준 확대(0.5억 원 → 1) 등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개선사항 ■

구분	〈현행〉	〈개선〉
보험료 인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형: 0.3%, 일반2형: 1.4% - 일반3형: 3.4%, 산재형: 0.9% ■ 농기계종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기종 평균 12.6%
가입연령 (농업인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2·3형 : 84세 - 87세: 일반 1형 - 84세: 일반 2·3형, 산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2·3형: 87세 - 87세: 일반 1·2·3형 - 84세: 산재형
국고지원 상한 기준 (농기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 - 가입금액(농기계가액) 0.5억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 - 가입금액(농기계가액) 1억 원 이하
보험료 할인 (농기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 - 최대 할인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 - 최대 할인율: 40%
보장 수준 (농기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신체손해 부상 보장 항목 - 보상한도액: 15백만 원 ■ 대물배상 - 보상한도액: 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신체손해 부상 보장 항목 - 보상한도액: 30백만 원 ■ 대물배상 - 보상한도액: 1억 원/2억 원/3억 원/5억 원 중 선택

㉔ 정책동향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대상자 ‘경북 울진군’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2.28.)

- [농식품부,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대상자 ‘경북 울진군’ 선정, 2023.2.28.]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 내용) △사업목적...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 환경가치를 전달하여 소비를 확대 하기 위해 친환경농식품 환경가치 교육·체험·소비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단지 조성, △지원내용...친환경농식품 교육·체험·홍보시설, 판매·가공시설, 기반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3.3.)

- [농식품부,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2023.3.3.] 농식품부는 2023년 부터 농촌주택개량 용자 지원사업을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용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 개량에 한 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
 - ※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
- (추진 목적) 농촌에 ‘세컨 하우스’ 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

〈농촌주택개량사업(용자지원, 이차보전사업) 개요〉		
◆ (목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 자금(용자 100%, 농협자금)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 최대 2억 원 ※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2% 고정 -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청년 기준 (2023년):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인 자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다만,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 혜택) 취득세(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2023년 지원 규모) 400,000백만 원		

㉔ 정책동향

‘농촌치유’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연계로 촉진

자료 : 농촌진흥청(2023.2.27.)

- [농촌진흥청, ‘농촌치유’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연계로 촉진, 2023.2.27.]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2023년 2월 27일, ‘농촌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

- (추진 목적)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확산하고, 치유농장과 마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추진하고자 마련

* 국립농업과학원(프로그램 개발·효과검증),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신규사업 개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운영자 역량 강화)

〈 ‘농촌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요 내용〉

- ◆ (국립농업과학원) 농촌 경관, 동·식물(곤충 포함), 음식 등 치유자원의 융복합 모델을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며, 치유 서비스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해 제공할 예정
-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 이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치유농장과 마을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 농촌 치유 서비스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운영자 역량을 관리할 계획

양봉산업 발전 위해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자료 : 산림청(2023.3.2.)

- [산림청, 미래 양봉산업 발전 위해 다부처 업무협약 체결, 2023.3.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 연구사업’ 의 원활한 운영과 상호협력을 위해 2023년 3월 2일, 4개*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주요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밀원식물의 개화기간 단축과 꿀벌 먹이자원 부족, 꿀벌 실종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

㉔ 정책동향

- (협약 주요 내용) △협약기관 간 협력사업의 발굴·기획 및 이행, △협약기관 소속 직원의 역량향상 및 인적교류, △협약기관 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공유, △그 밖에 5개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협력사업 등

- (국립산림과학원) 새로운 밀원자원 발굴과 기후변화 대응 신제품 육성 연구, 그리고 밀원단지의 소득 증진 모델 실증연구를 수행
- (국립농업과학원) 꿀벌 강건성 연구를 위한 꿀벌 스마트 관리기술, 꿀벌의 최적 영양 분석, 꿀벌 해충의 관리, 벌꿀 생산 최적 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 특성과 가치 평가 등을 수행
- (농림축산검역본부) 꿀벌 질병 진단과 제어 기술을 연구해 꿀벌 스트레스 지표를 발굴하고 관리 기술을 개발
- (국립기상과학원)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등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고유 연구 개발을 추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분 매개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기술을 개발

◆ 축산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2023.2.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3.2.28.] 2023년 2월 28일,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 (약 80,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

※ 가금농장 발생(2022.10.17.~): 68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5건, 육계 3건, 종계 3건, 산란계 23건, 토종닭 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아젠다발굴 바이오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전망 외

이슈 브리프 1 바이오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전망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바이오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전망” (2023.2.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2022년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개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오경제에 대한 지원 전략이 주목되는 바, 그간 미국이 보아왔던 바이오경제 정의와 향후 변화를 전망*
 - ※ 주요 출처: Sustainability, Understanding the U.S. Bioeconomy: A New Definition and Landscape, 2021.2.

<초기 개념>

- [초기 개념] 미국 바이오경제 정의에 대한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바이오경제를 개념화하는 시도에서 시작
- 미국 NIH 디렉터였던 Bernadine Healy 박사는 1992년 연설에서 “바이오경제*” 라는 용어를 사용
 - ※ 바이오경제는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바이오경제의 제품에는 환경 바이오센서 역할을 하는 미생물, 생합성 거미줄로 만든 직물, 생합성 경로를 통해 만든 화학물질, 효모나 박테리아로 만든 새로운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등이 포함
 - 생명과학의 혁명은 의학을 넘어 농업, 화학, 환경, 전자공학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름도 모르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
 - 국가경쟁력과 세계 리더십의 원천이 될 21세기 새로운 산업은 바이오경제에 기반을 둘 것으로 전망
- 1997년 Juan Enriquez와 Rodrigo Martinez는 컨퍼런스에서 “바이오경제” 를 언급*
 - ※ Enriquez, J. Genomics and the world's economy. Science 1998
 - Enriquez는 바이오 기업의 목표가 더 이상 의학, 화학 또는 식품과 같은 단일 영역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강조
 - 식물 기반 등의 바이오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큰 변화를 전망하며, 바이오 경제의 부상을 예고

㉔ **아젠다 발굴**

<개념 개발>

- [개념 개발]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을 발표*
 - ※ White House.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White House, 2012
-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은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이오경제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
 - ※ 전략적 R&D 강화, 실용화/사업화 촉진, 규제 개선, 바이오경제 인력 양성,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등의 목표를 제시
- 발표 이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이 바이오경제 전략을 발표하며, 바이오경제 및 기술 경쟁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

<대안적 접근법>

- [대안적 접근법] 2016년 Budget은 바이오경제를 3개 분야(생명공학, 생물자원, 생물생태학)의 비전으로 구분하여 정의
- [생명공학 비전] 특정 제품 및 생산 공정을 강조하는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
 - 대부분 국가는 바이오 기반 의약품을 바이오경제의 주요 사례로 간주하고 있으나, 북유럽 국가들은 건강 증진을 위해 고안된 기능성 식품 및 기능 식품을 강조
- [생물자원 비전] 화석 연료를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대체하는 데 중점
 - 2015년 미국 농무부(USDA)는 BioPreferred 관련 보고서에서 바이오 기반 제품 산업을 7개*로 분류
 - ※ 농업 및 임업, 임산물, 천연섬유 직물, 바이오 정제, 바이오 기반 화학물질, 효소, 바이오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 산업
 - 미국 에너지부(DOE)는 생물자원 공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바이오 기반 화학 물질, 바이오 디젤, 에탄올, 매립 가스, 목질 바이오매스 및 목재 폐기물을 포함 하는 광범위한 기술 및 제품을 고려
- [생물생태학 비전] 에너지와 영양분 사용을 최적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촉진하며, 토양 황폐화를 방지하는 생태학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㉔ **아젠다 발굴**

- EU는 “순환 바이오경제(circular bioeconomy)” 개념에 주목하고 바이오 기반 자원(농업 및 임업 폐기물 등)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 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
- 바이오경제에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을 인식
※ Sustainability, A. What is the bioeconomy? A review of the literatur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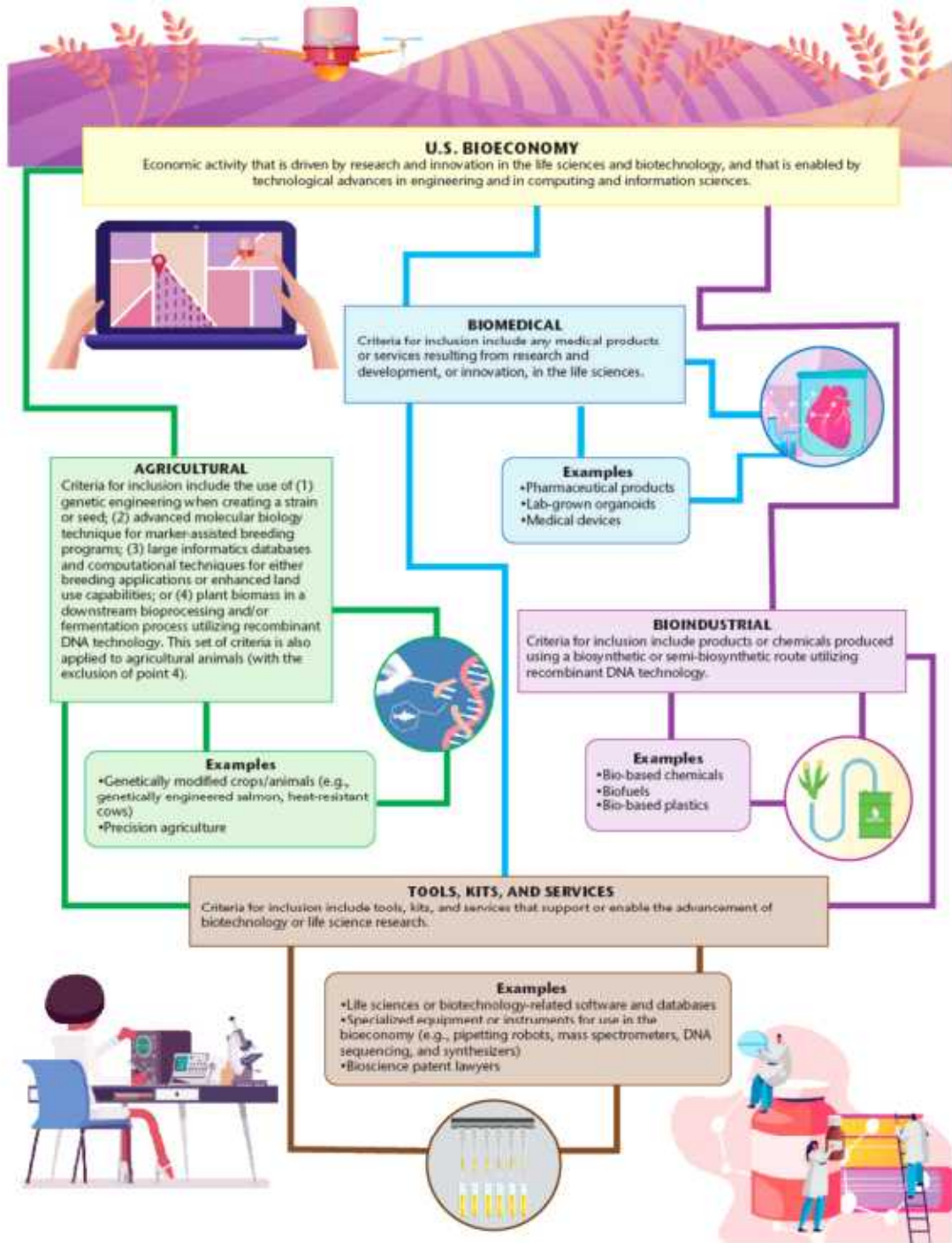
<최근 정의>

- [최근 정의] 2020년 미국 국립과학원은 바이오경제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오경제의 정의와 주요 영역 등을 제시
 - 미국의 바이오경제는 “생명과학(life sciences)과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의 연구 및 혁신에 의해 추진되고, 공학, 컴퓨팅, 정보과학(engineering, computing and information sciences)의 기술적 진보로 가능해지는 경제활동”으로 정의
- 위의 정의는 생명과학과 바이오기술의 연구 및 혁신과 연관된 모든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포함하며, 다양한 과학 및 공학과의 융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바이오경제의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특성은 생명과학과 무관하다고 여겨져 온 경제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과 성장의 열쇠
- 바이오경제 내 활동을 농업(그린바이오), 생물의학(레드바이오), 산업바이오(화이트 바이오) 등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
 - 영역 전반에 교차(cross-cutting)하는 공통기반으로서의 도구, 키트 및 서비스 영역을 추가

〈미국 바이오경제 4대 원동력〉	
◆ ①	생명과학(Life sciences) : 모든 생명체를 이해하는 생물학의 하위 학문으로, 바이오경제의 핵심, 특히 생물, 생물의학, 환경생물학, 농업과학 등이 해당
◆ ②	생명공학(Biotechnology) : NGS, 대사공학, 유전자 편집 등의 기술 발전이 바이오경제를 가능하게 함. 질병 치료, 작물 수확량 개선,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하게 응용 가능
◆ ③	엔지니어링(Engineering) :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수백만 번의 실험이 필요하므로, 설계-구축-시험(design-build-test)과 같은 공학 원리를 생물학에 적용
◆ ④	컴퓨팅 및 정보과학(Computing and information sciences) : 머신러닝 등 컴퓨팅 기술은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에서 명확하지 않은 패턴을 관찰하고 가망성이 없는 실험을 제거하여 가장 유망한 후보를 도출
출처: NASEM, Safeguarding the Bioeconomy;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USA, 2020.	

㉔ 아젠다 발굴

▣ 바이오경제 주요 영역 및 사례 ▣



출처 : NASEM, Safeguarding the Bioeconomy: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USA, 2020.

<최근 동향>

- [최근 동향] 2022년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부처별 후속 조치가 진행 중

㉔ **아젠다 발굴**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개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부처별로 주요 업무를 진행할 계획
 - ※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혁신 발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dvanc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novation for a Sustainable, Safe, and Secure American Bioeconomy)
- [바이오경제에 대한 측정 및 평가방법 개발] 생명공학의 바이오경제 기여도, 바이오경제의 경제적 기여도 등의 측정 방법을 개발
 - 상무부(DOC)는 바이오경제 측정방법과 표준, 데이터를 개발하는 국립표준기술 연구소(NIST)의 바이오기술 연구 프로그램에 1,4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미국 바이오경제에 대한 위협 평가] 국가정보국장(DNI)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개발 및 적용으로부터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포괄적인 기관 간 평가를 주도
 - 국가핵안보국(NNSA)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리스크를 예측, 평가, 감지, 완화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00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 보안 프로그램을 추진
-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데이터 공유 촉진] 국립보건원(NIH)은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프로그램을 통해 암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확장하고, 농무부와 함께 빈곤에 대한 데이터가 암 모니터링에 통합
 - 과학재단(NSF)은 생명과학 데이터센터에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방안을 발표
-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경제 구축] 생명공학과 바이오제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서 건강 안보에 이르기까지 시급한 글로벌 문제를 국제협력으로 해결할 전망
 - 생명공학 제품개발 및 사용이 민주적 윤리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국제협력 발전을 촉진
- [국가마다 바이오경제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이] 바이오경제 정의에 관해 북미는 좁은 접근 방식을 취하고, EU 등 다른 국가는 더 넓은 접근 방식을 채택
 -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와 BioMonitor 프로젝트 등 EU의 최근 활동에서 바이오경제 정의를 위한 접근 방식을 논의하고,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연구 협력 및 정책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㉔ **아젠다 발굴**

이슈 브리프 2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3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3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TEP 브리프 58, 2023.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은 전 세계가 직면한 현재 및 중장기 위험요인을 담은 “Global Risks 2023” 을 발표*(2023.1.11.)
 - ※ WEF는 1,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 인식조사(GRPS)를 실시, 보고서로 발표해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18번째 연례보고서
-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 및 준비도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

<위험 요인>

- 글로벌 위험을 경제, 환경, 사회 등 5개 부분 및 단기(~2년), 장기(~10년) 위험*으로 나누어 총 32개 위험으로 제시
 - ※ 단기(0~2년)는 현재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당장의 위기이며, 장기(5~10년)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임.

▮ 장·단기별 심각성 기준 순위: 글로벌 위험(상위 10위) ▮

〈 향후 2년간 인류를 위협할 단기 리스크 〉		〈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리스크 〉	
1	생활비 위기	1	기후변화 완화 실패
2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2	기후변화 적응 실패
3	지정학적 대립	3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4	기후변화 완화 실패	4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5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5	대규모 비자발적 난민사태
6	대규모 환경피해	6	천연자원 위기
7	기후변화 적응 실패	7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불안 확산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불안 확산
9	천연자원 위기	9	지정학적 대립
10	대규모 비자발적 난민사태	10	대규모 환경피해

경제	환경	사회	기술	지정학
----	----	----	----	-----

㉔ 아젠다 발굴

┃ 글로벌 위험요인 목록 ┃

글로벌 위험		내 용
경제위험	주요국 자산버블	주요국 내 제품, 주택, 주식 등과 같은 지속 불가능한 과대 계상된 자산
	시스템적 중요 산업 혹은 공급망 붕괴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초래하여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 등 사회에 영향
	부채 위기	법인 혹은 국가 자금의 부채 축적을 감당하기 위해 대량 파산, 채무 불이행, 국가 부채 위기 등 발생
	물가 안정화 실패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 통제 불가
	불법 경제 활동 확산	조직적인 범죄 및 기업의 탈세, 위조, 인신매매 등으로 경제발전과 성장 저해
	경기침체 장기화	수년 동안 지속된 더딘 글로벌 성장이 침체 기간 발생
환경위험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산업 및 인류 생존 자원의 심각한 고갈을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 파괴
	기후적응 실패	탄력적 기반 시설의 부족 및 기후 변화 조치 투자의 실패
	기후변화 완화 실패	탈탄소와 같은 기후 변화 완화 조치 투자 및 시행 실패
	대형 인재	삶, 건강, 인프라, 재산, 경제적 활동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 인재 (원유 누출, 핵사고 등)의 예방 실패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지진, 홍수, 혜성 충돌 등 극단적 기상 이변에 의한 인명, 재산, 인프라, 환경 피해
	천연자원 위기	과잉 착취, 잘못된 관리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 천연 자원 공급 부족 사태
지정학적 위험	지정학적 대립	지정학적 이점과 영향력 행사를 위해 상품, 지식, 기술 등을 제한하여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작용 분리
	다국적 기구 약화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재정, 환경, 무역 등에 대한 비효율적 국제 협력 메커니즘
	국가 간 분쟁	국가간 양자/다자간 분쟁으로 경제적 (무역/통화, 자원 국유화), 군사적, 사회적, 사이버 등의 갈등 고조
	국가 붕괴 및 위기(쿠데타)	부패, 지역·글로벌 불안정, 군사 쿠데타 등에 의한 지정학적 중요성 붕괴
	대규모 테러 공격	정치적·종교적 목표를 가진 개인 또는 비국가단체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대량 살상무기	핵, 화학, 생물학, 방사능 관련 기술에 의한 국가 간 위기 및 심각한 살상 가능성

㉔ 아젠다 발굴

글로벌 위험		내 용
사회 위험	만성 질환 및 건강상태	과도한 소비 습관 및 경제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만성 질환 증가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보건, 교통, 주거 환경 등 사회적 시스템 및 혜택 침식
	생활비 위기	실질적 소득에 비해 생활품 비용의 증가로 생활 유지 난조
	고용 위기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근로자 권리 침해, 불안전 고용 증가 등 구조적 악화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소득 계층, 인종, 연령과 같이 사회적 지위 및 구조 등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자본 손실과 분열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사망자 속출 및 경제적 붕괴
	비자발적 대규모 난민사태	갈등, 재난, 환경적·경제적 원인 등에 의한 대규모 비자발적 난민 사태
	허위 정보 확산	미디어 조작, 개인 등에 의한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로 사회적 분란 야기
	정신 건강 악화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장애 확산으로 사회적 결속 및 생산성 등 부정적 영향 초래
기술 위험	기술발전의 부작용	인공지능, 생명공학, 지구공학,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 발전에 의해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
	주요 정보인프라·네트워크 파괴	중요 정보인프라(인터넷, 위성 등)와 네트워크의 시스템 장애로 생산, 공공 서비스 및 통신에 악영향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및 기술에 대한 분열
	디지털 전력 집중	소수의 개인, 기업 또는 국가 간의 디지털 자산·기술 반독점 규제의 실패
	사이버 범죄 확산	사생활 침해, 데이터 사기 또는 절도 등 정교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불안

○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문제, 물가상승, 에너지 공급 위기** 등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가 **가장 큰 위험**으로 제시

- **생활비 위기**는 **최근 2년간 물가상승**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가장 큰 위험**으로 부상

- COVID-19 유행 이전부터 기본생활품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가격이 급상승
-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둔화가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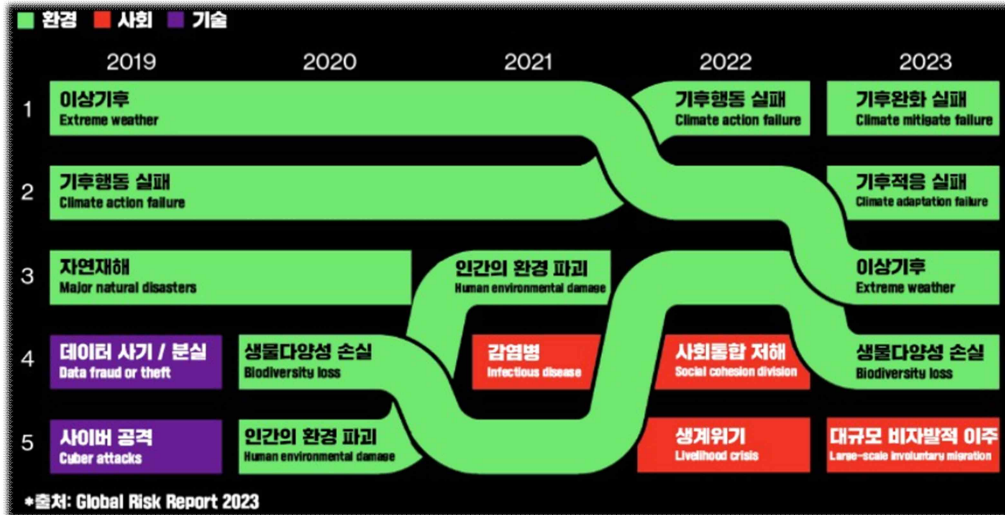
- 그 외 **단기 위험요인**으로는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2위), 지정학적 대립(3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4위)** 등이 포함

○ **장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위험은 **기후변화 완화 실패**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 위험**에 **환경**과 관련된 **위험 6개 포함**

㉔ 아젠다 발굴

- 지정학적 대립,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기후변화 완화 실패 등 9개 요인이 단기·장기 상위 10위 내에 공통으로 포함

▣ 지난 5년간(2019~2023) 글로벌 장기 리스크 순위 변동 ▣



※ 출처: Global Risk Report 2023, ©greenium

- 기후 및 환경문제를 인류의 생존 및 경제를 위협할 주요 위험 요소로 인식
 - 전년도 조사와 달리 기후행동 실패를 기후 완화 실패, 기후적응 실패로 분류하여 질의하였으며, 기후완화 실패(1위), 기후적응 실패(2위)가 상위권을 차지
 - 기후완화 실패에서 생물다양성 손실까지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위험 4가지는 모두 환경과 연계***
 - ※ (1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4위)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으로 여겨지며, **향후 2년 및 10년 동안 상위 위험 10개 목록에서 제외**

<글로벌 전망>

- 단기와 장기 모두 경제, 산업, 재난 등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인 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단기) 응답자의 82%는 **향후 2년간 세계가 위기에 빠지거나 지속적인 불안을 겪을 것으로 예측***
 - ※ 다양한 충격으로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동(1위, 69%), 국지적인 사건으로 일부 변동(2위, 14%), 점진적인 변화와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는 지속적 위기(3위, 13%)

㉔ 아젠다 발굴

- (장기)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이 위기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세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 다양한 충격으로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동(34%), 국지적인 사건으로 일부(2위, 26%), 점진적인 변화와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는 지속적 위기(3위, 20%)

장·단기별 글로벌 전망



- 사회결속력의 침식, 국가 붕괴, 중요 공급망의 체계적 붕괴*는 타 위험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erosion of social cohesion, state collapse, collapse of a systemically important supply chain

- 개별 위험 요인들은 연계성을 가지고 동시 충격 및 상호 작용에 따라 동시다발적 위기(polycrisis)를 야기
- 특히, 자원 및 천연자원 경쟁의 결과로 상호 연계된 환경, 지정학적 및 사회·경제적 위험에 의해 경쟁 발생

<참고: 천연자원을 둘러싼 다중위기(polycrisis)>

- ◆ 2023년 보고서에서는 다중위기 시나리오 중 ‘천연자원 쟁탈 경쟁’을 중점적으로 다룸.
 - 지난 1년간 식량에서부터 에너지, 광물까지 전반적인 자원의 수요와 공급 간에 큰 격차 발생*
 - ※ 많은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지정학적 분쟁이 발생했고, 이는 국민의 생계에까지 영향
 - 천연자원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② 글로벌 협력*임.
 - ※ 기후변화는 천연자원의 사용 가능량을 변화시키며, 글로벌 협력은 자원 분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 WEF는 이를 기반으로 천연자원 다중위기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

-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요인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2년간 우리나라의 위험요인으로는 (1위) 빠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2위) 경제적 활동에서의 불법 확산, (공동 3위) 심각한 상품 공급 위기, 상품 가격 쇼크, (공동 5위) 자산버블위험, 부채위기 대한 우려 존재

㉔ **아젠다 발굴**

〈위험에 대한 글로벌 대응〉

- 32개 개별 위험에 따른 준비도와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음.
 - 단기 리스크 중 가장 큰 위험인 ‘**생활비 위기**’는 위험 준비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National Governance)가 **위험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장기 리스크 중 가장 큰 위험인 ‘**기후변화 완화 실패**’는 위험 준비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인 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이 **위험관리**에 가장 **최적화**된 것으로 제시

〈WEF 권고사항〉

- **위험 식별 및 예측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적극적인 미래 정보 수집 필요
 - 경제, 경영, 기후, 바이러스, 재난 등 다양한 분야 및 관점에서 미래 정보 수집을 통한 예측 강화 및 위협을 식별할 필요
 - 새로운 **거시적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향상된 위험 식별 및 예측 능력을 통해 의사결정 및 핵심 아젠다를 마련
- **위험에 대한 고찰과 균형적인 시각 및 사고 요구**
 - 자원 조달 부족, 지역 환경 재해 등 국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만 집중하지 않고, **위험 간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
 - **글로벌 리스크 상위 순위**에 꾸준히 등장하는 **기후, 자연** 등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험**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식량, 수자원, 기본 통신 서비스 및 공공안전의 잠재적 장애**를 포함한 **다중 공동 영역 대응에 집중** 필요
 - 위험과의 상호 연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 간의 상호 연계성 평가*** 및 **중요한 영역에서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할 필요****
 - ※ (미국) 향후 30년간 글로벌 재난 위험 평가를 위한 부처 공동 위원회 구성 및 위험 발생 시 운영 및 중요 인프라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전략 개발 법안 도입
 - ※※ (영국) 다양한 지역사회에 위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사회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중

㉔ **아젠다 발굴**

- 중요한 영역에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성과를 거두고 알려진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 그리고 장단기 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 **글로벌 리스크 대비**를 위한 **국가 간 협력 재구축 및 강화** 필요
 - 글로벌 리스크는 복잡하며,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지역, 국가, 글로벌 수준의 조치가 필요, 일부 자연재해, 극단적인 기상 이변 및 테러 공격 등에 대해서는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협업 모니터링 프로세스 확립*** 필요
 - ※ 탈탄소화 전략 및 과학 기반 목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기후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존재
 - 개별 국가별 대비와 글로벌 협력 간의 균형이 필요하며, **기업과 정부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시사점>

- **중장기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및 국가위협체계 구축**
 -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등 지속적인 미래 연구 및 극단적 사건(X-event) 예측 연구 수행, △미래 위험 최소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기반의 프로젝트 수행* 필요,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필요자원** 및 인력 확보 강화
 - ※ EU는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 극복,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슈 탐지 프로젝트(iKnow)를 지속 추진 중(167개국 커뮤니티, 델파이 기법 활용)
 - ※※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자연어처리기반 징후 감지, 글로벌 기후 예측 및 단 중기 기상 데이터 활용 징후 감지, 기상위성 기반 기후재난 관측 등
- **중장기 위험에 대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부담**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기후 위기 등 범국가적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위험 관련 기술·정보 공유 강화 및 글로벌 공조 체계 마련
 - 보건·기후·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등을 위한 다자협력 의제 선도
- **미래위험 대응** 및 **미래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 미래위험 대응을 위해 각 위험 분야에서 국내 산업·기술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적극 참여

㉔ 아젠다 발굴

- 광물·에너지·식량 등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 국제표준화 협력 확대*

※ 미국·유럽 등과 친환경·저탄소 자원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 국제표준화 참여 등

【 참고: 글로벌 위험 순위 】

〈 향후 2년간 인류를 위협할 단기 리스크 〉		〈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리스크 〉	
1	생활비 위기	1	기후변화 완화 실패
2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2	기후적응 실패
3	지정학적 대립	3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4	기후변화 완화 실패	4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5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5	비자발적 대규모 난민 사태
6	대형 인재	6	천연자원 위기
7	기후적응 실패	7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8	사이버 범죄 확산	8	사이버 범죄 확산
9	천연자원 위기	9	지정학적 대립
10	비자발적 대규모 난민 사태	10	대형 인재
11	부채 위기	11	허위 정보 확산
12	물가 안정화 실패	12	다국적 기구 약화
13	경기침체 장기화	13	국가 간 분쟁
14	국가 간 분쟁	14	부채 위기
15	다국적 기구 약화	15	생활비 위기
16	허위 정보 확산	16	주요 정보인프라·네트워크 파괴
17	시스템적 중요 산업 혹은 공급망 붕괴	17	디지털 전력 집중
18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18	기술발전의 부작용
19	고용 위기	19	물가 안정화 실패
20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20	만성 질환 및 건강상태
21	대량 살상무기	21	경기침체 장기화
22	주요국 자산버블	22	국가 붕괴 및 위기 (쿠데타)
23	정신 건강 악화	23	고용 위기
24	주요 정보인프라·네트워크 파괴	24	시스템적 중요 산업 혹은 공급망 붕괴
25	국가 붕괴 및 위기 (쿠데타)	25	정신 건강 악화
26	만성 질환 및 건강상태	26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27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27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28	불법 경제 활동 확산	28	대량 살상무기
29	디지털 전력 집중	29	불법 경제 활동 확산
30	대규모 테러 공격	30	디지털 불평등
31	디지털 불평등	31	주요국 자산버블
32	기술발전의 부작용	32	대규모 테러 공격

경제	환경	사회	기술	지정학
----	----	----	----	-----

※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단·장기적 32개의 글로벌 위험 순위 제시

㉔ **아젠다 발굴**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EU의 대응 방안

※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2023.2.1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와 EU의 대응 방안**

-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과 **야생조류**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분류됨.
 - **저병원성 바이러스(LPAI)**는 **가벼운 질병**을 **유발**하거나 **무증상**일 수 있지만, **고병원성 바이러스(HPAI)**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높은 **사망률**을 초래함.
- 일부 **HPAI** 균주는 **감염된 동물**, **오염된 환경**, **중간 숙주**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인간**을 **감염**시킬 수도 있음.
 - **가금류 제품**의 **소비**를 통한 **전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날고기**의 안전한 **취급** 및 **조리**와 **청결한 주방 위생**을 권장함.
 - 일부 **LPAI**는 **고병원성 균주**로 **변이**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발병 관리**가 중요함.
- **유럽위원회** 시행규정에 따르면, **HPAI**는 ‘**A 유형**’ **질병**으로 **분류**되며, 발병이 확인되면 관할 당국은 즉시 모든 **근절 조치**를 시행함.
 -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 내 **모든 가금류**를 **도살**하고 **사체**를 안전하게 **폐기**하며, **오염된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이 이루어짐.
 - **HPAI 퇴치 이후**에도 영향을 받는 시설 주변 **10km 이상**을 최소 **30일** 동안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며, 제한 구역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됨.
 - **HPAI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물**의 **거래**는 **허용**하며, 이에 대한 **감시**는 **유럽연합** 내에서 **수행**됨.
- **HPAI**는 주로 **야생조류**의 **이동**, **감염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사람의 이동** 및 **물리적 매개체** 등 세 가지 **감염 경로**를 지니고 있음.
 - **발병 위험시기**에 **농장 차원**의 생물학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함.

㉔ **아젠다 발굴**

- 가축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을 통제하고, 야생조류가 모이는 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을 최소화해야 함.
- 신발 및 자동차 바퀴의 소독을 강화하고, 사냥 등으로 인해 야생조류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함.
- HPAI는 가금류 산업과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회원국들은 역학적 환경이 좋은 경우 HPAI에 대한 백신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EU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백신은 하나뿐임.
-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EU 레퍼런스 연구소,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따르면, 유럽은 2021~2022년 기간에 역사상 최악의 HPAI 유행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 내 37개국이 영향을 받았으며, 5천만 마리의 조류가 죽거나 살처분됨.
- 유럽 내에서 가금류 백신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유럽 가금류 연합단체(AVEC) 대표들은 HPAI에 따른 피해와 EU의 방역 조치 및 감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백신 사용에 대한 논의에 참여함.
 - 유럽동물보호단체는 대량 살처분에 따른 동물복지 문제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살처분을 주장하면서 백신에 대한 투자를 촉구함.
 - Animal Health Europe, 유럽반려동물수의사연합과 유럽수의사연맹은 2022년 공동 성명에서 동물건강 보호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주장함.
- 유럽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의 추가 개발과 허가를 요구하는 한편, 유럽 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제약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2021년 10월 유럽의회는 ‘farm to fork’ 전략에 대한 결의안에서 HPAI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더욱 높은 기준을 통한 농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

㉔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량·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4)

※ 일본 농림수산업성 “食料・農業・農村をめぐる情勢の変化(持続可能な農業の確立)”
(2023.1.1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식량·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지속가능한 농업 확립(4)

-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2023년 1월 13일, 제7차 기본법검증부회에서 **식량·농업·농촌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에 대해 논의하였음.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농업 영향과 대응〉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대규모 자연재해 증가] 일본 연평균 기온은 100년마다 1.30℃ 비율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일본의 평균기온은 통계를 시작한 1898년 이래 가장 높음(2022년은 4번째로 높음).
 - 농림수산업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미 고온 및 폭우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 최근 몇 년 동안 폭우,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농림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 (농림수산 관련 피해액) 2019년 동일본 태풍 등 약 3,446억 엔, 2020년 7월 호우 약 2,207억 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동기 대설 210억 엔, 2021년 8월 폭우 856억 엔
- [수확량·품질·재배 적지 등] CO₂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품종 구성 및 재배기술에 변화가 없는 경우, 일본 전체 수도작 수확량은 21세기 말에는 20세기 말의 약 80%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고, 일본 전체 평균 백미숙립(白未熟粒)률은 21세기 말에는 약 40%로 예측됨.
 - 포도 주산지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착색 불량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과 및 감귤(온주밀감) 재배 적지가 북상 및 내륙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됨. 농업 생산 현장에 적절한 적응책을 도입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가축 전염병 및 병해충] 기후변화 및 농지 이용 변화에 따라 가축 전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굴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등 병해충 발생지 증가, 발생 시기 조기화, 발생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음.

㉔ **아젠다 발굴**

- 일본 방문객 수는 20년간 약 7배 증가하였으며, 반입 금지품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병해충** 및 **가축 전염병 유입** 및 **확산 위험성이 증가함**.
- 이러한 **가축 전염병** 및 **병해충**은 **식량 산업을 위협**하며, 중국에서는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돼지사육 두수가 약 40% 감소**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하였음.
- 2018년에는 가고시마현 등에서 발생한 **고구마 기부병(基腐病, foot rot disease)**으로 인해 **수확량이 평년 대비 20% 감소**함.
- **[기후변화 대응인]** 재해 및 기후변화에 **강한 지속적인 농림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 ❶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 제공,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 생산기술·품종 개발, 기후변화 등 영향을 고려한 작물 도입**
 - ❷ **생산 기반 방재·감재 기능 유지·향상 등 추진**
 - ❸ **병해충 유입·확산, 가축 전염병 확산 등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검역 대책, 농장 관리 강화**

〈총론〉

- **기존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이하 기본법)**에서는 **농업의 식량 공급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기본법**에서는 **농업의 외부경제효과**를 **다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하여 **농업 환경부하**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식량 공급도 생태계 서비스***의 하나로 재검토하여, 전체적인 **생태계 서비스 향상**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 Ecosystem services: 생태계가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이득을 주는 기능
- 또한, **농업 기본방향은 화학 농약·비료 사용 감소, 탄소중립** 등에 추가로 **인권 배려, 동물복지** 등 **사회적 과제**도 제기되고 있음.

㉔ **아젠다 발굴**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주류화하는 방향에서 **각국**에서 **농업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에서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 손실을 줄이는 등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기반으로 **미도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추진**하는 수준에 그쳐, **소비자 의식** 양성을 통한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자 행동 변화**가 요구됨.
- **농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재배 적지 변화**, **대규모 자연재해 증가**, **가축 전염병** 및 **병해충 유입·확산** 등에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도 **식량 공급**을 **생태계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주류화**할 필요가 있음.
- **푸드체인** 전체에서 **식품손실**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입 원재료 조달**, **소매·유통** 및 **소비자 행동 변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일부 사람이 아닌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에서 추진 가능한 **대응**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그린화(政策手法のグリーン化)*’**가 **필요**함.
 - ※ 2030년까지 정책 지원 대상을 지속 가능한 식량·농림수산업을 이행하는 자에게 집중하고, 2040년까지 기술개발 상황을 토대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보조사업 시행, 보조금 확충 등
-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재배 적지 변화**, **대규모 자연재해 증가**, **가축 전염병** 및 **병해충 유입·확산** 등 **위험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품종개발**, **기술개발** 및 **검역 대책 강화** 등을 통해 각각의 **생산자·생산 지역**에서도 **위기관리 의식**을 높여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kensho/attach/pdf/7siryo-9.pdf>

㉔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주요 동향(4)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주요 동향(4)

-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조정 제도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2023년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져
- 의무매입 조건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재량권을 넓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이 예정된 상태에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기 때문
 -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혹은 가격 하락 5~8%’로 조정한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까지 거부
 -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수치를 조정하더라도 매입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정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재정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혀
 - 김진표 의장은 “선례를 살펴본 결과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 안전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
 - 이어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냐”며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부연 설명

㉔ **아젠다 발굴**

- 그러면서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점은 높이 평가 하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한다” 며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협상을 해 달라” 고 당부
- 김진표 의장은 대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2023년 3월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 그에 따라 처음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
 - “**늦어도 3월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 고 약속
-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양당 간 신경전이 더 과열되고 있어 협의에 의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
- **정부·여당**은 해당 양곡관리법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혀 왔으며,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해 매입 기준이 완화되긴 했으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부분이 유지돼 해당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정부는 해당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연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망
 -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기정사실화**, 다만 시점에 대해선 미정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 관리법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고 언급하면서 **의무매입이 쌀 시장의 만성적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이 되려 떨어지고 세금만 낭비**할 것이라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고수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떨어지면 대농은 남는 쌀을 창고에 저장**했다가 이듬해 7~9월 **쌀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파는 식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지만, 10~12월 수확기에 **쌀을 전량 농협이나 민간RPC에 파는 중·소농은 쌀값 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고 언급

㉔ **아젠다 발굴**

- 이처럼 양당 간 **이견 차가 크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공산이 커졌으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간 갈등은 더 첨예화**돼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농민들만 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
- 이와 관련해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지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며,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아온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고육지책**” 이라고 강조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밝혀
- 한편,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해온 농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선 **반대**에 나서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스러운 상황
 - 주요 농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쌀생산자협의회**는 2023년 2월 27일, “쌀값 폭락 방조법, 양곡관리법 중재안 처리 중단하고 농민들과 **재논의를 실시**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반대**하고 나서, **매입 의무 기준을 높인 것**이 되려 **정부 개입을 축소**시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자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 (KBS, 2023.2.27.), “김진표, 양곡관리법 표결 보류... “3월 첫 본회의서 처리” ” (NESIS, 2023.2.27.), “ ‘양곡관리법 개정’ 중재안에도 여야 첨예 대립” (농민신문, 2023.2.27.), “대통령실 “쌀의무매입법 거부권 행사할 것” ” (매일경제, 2023.2.27.), “尹대통령 거부권 압박 통했다...국회, ‘쌀 의무매입법’ 처리 연기” (머니투데이, 2023.2.27.), “양곡법 통과면... 쌀값 떨어져 중·소농이 더 피해본다” (조선일보, 2023.2.28.), “ “쌀 의무매입 철회 없인 합의 없다” ...중재안 반대 나선 농민단체” (한국경제, 2023.2.28.),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한국농어민신문, 2023.2.28.), “야당 단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농축유통신문, 2023.3.2.)

※ **국회 정책세미나 일정입니다.** 📅

일정	세미나	장소
2023년 03월 08 (수) 14:00	•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 출처: 국회 홈페이지

통계·조사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3.3.)

□ 개요

- [농식품부,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3.3.] 농식품부는 최근 5년(2017~2021) 귀농·귀촌 6,000가구(귀농 3,000, 귀촌 3,000)를 대상으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조사 기간: 2022.10월~12월)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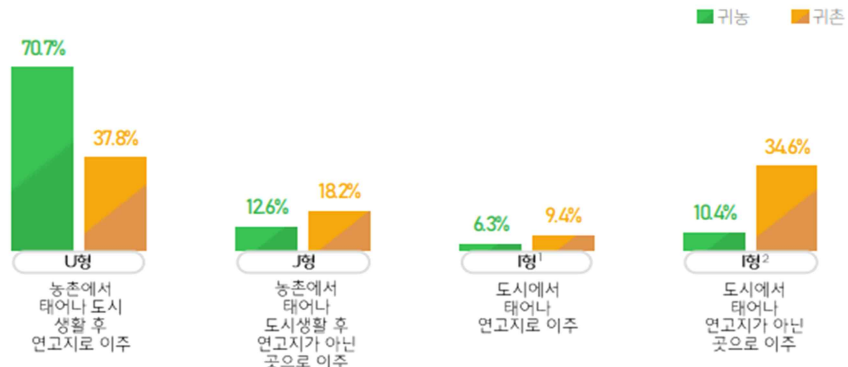
- [귀농귀촌 유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형*, 귀농 70.7%, 귀촌 37.8%)하는 경향 지속, 귀촌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이 증가세, 이는 귀농귀촌을 주도하는 연령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 U형 귀농 증가세: (2018) 53.0% → (2019) 54.4 → (2020) 57.6 → (2021) 67.6 → (2022) 70.7
 - ※※ I형 귀촌: (2018) 29.4% → (2019) 31.9 → (2020) 33.8 → (2021) 35.7 → (2022) 34.6
 - ※※※ 귀농은 농촌 생활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50대 이상 가구가 76.7% 차지, 이에 반해 귀촌은 30대 이하 청년 가구가 43.3%(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2022.6월)
- [귀농귀촌 이유] 귀농은 자연환경(32.4%), 농업비전·발전가능성(21.0%) 순,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취업(22.6%), 자연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순
 - (귀농)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33.4%), 가업승계(24.0%), 자연환경(18.3%) 순이나,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이 1순위 / (귀촌) 청년층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34.7%)이 1순위이나, 50대 이상은 정서적인 여유(19.4%), 자연환경(18.3%) 순
- [준비기간] 귀농 준비*에 평균 24.5개월** 소요, 귀촌은 15.7개월
 - ※ 주요활동: (귀농) 정착지역 탐색(45.1%) > 주거·농지 탐색(34.0%) > 자금조달(10.3%) > 귀농 교육·체험(10.0%) / (귀촌) 주거지 확보(40.2%) > 정착지역 탐색(40.0%) > 자금조달(10.3%)
 - ※※ 준비기간 감소세: (2018) 귀농 27.5개월 / 귀촌 21.2 → (2020) 25.8/17.7 → (2022) 24.5/15.7
- [교육] 귀농가구의 50.0%, 귀촌가구는 5.7%가 귀농·귀촌 교육 이수
 - 귀농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귀농 5년 차의 소득은 이수한 경우 2,283만 원, 미이수 1,192만 원

㉔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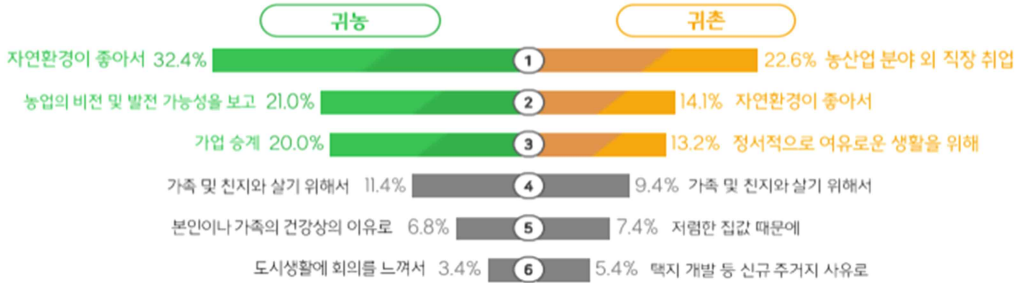
- [소득] 귀농, 귀촌 5년 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206만 원, 4,045만 원으로, 첫째 2,268만 원, 3,521만 원 대비 각각 41.4%, 14.9% 증가
 - 귀농 가구의 주 재배작목은 논벼(31.8%), 채소(30.4%), 과수(15.8%)이며*, 주 작목 선택 이유는 재배의 용이성(50.3%), 높은 소득(22.2%) 순
 - ※ 재배작목: 논벼(31.8%) > 채소(30.4) > 과수(15.8) > 서류(10.5) > 특약용(4.6) > 두류(2.3)
- [경제활동] 귀농 가구의 45.4%가 소득 증가 등을 위해 농업생산활동 외의 경제활동 수행(농업 임금노동 27.7%, 직장 취업 26.6, 자영업 17.9), 귀촌 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
 - 귀촌 이후 영농 시작시기는 1년 이내가 88.5%로 가장 많았고, 1~2년 이내 9.8%, 2~3년 이내 0.9%
- [지출]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 원, 귀촌 216만 원으로, 귀농귀촌 전 265만 원, 258만 원과 비교해 각각 30.9%, 16.3% 감소
 - ※ 지출항목 비중(귀농/귀촌): 식비(53.5%/57.7%), 주거·광열·수도·전기(28.8/17.7), 건강·의료(5.9/4.9), 교통통신비(4.5/3.9), 교육비(4.3/10.8), 문화·여가생활비(2.4/4.6)
- [주거*] 거주 주택의 종류는 귀농 가구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91.9%), 귀촌은 아파트(40.3%) 및 단독주택(40.1)
 - ※ (주택 점유 형태) 자가(귀농 68.8%, 귀촌 53.6%), 전월세(귀농 11.4, 귀촌 39.2), 지원정책 활용(마을 내 빈집 및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주, 귀농 5.2, 귀촌 1.5) 순
- [지역융화] 귀농가구의 67.8%, 귀촌가구의 49.8%가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 고 응답, '나쁘다' 는 응답은 각각 2.3%, 1.9%
 - 주요 갈등 요인*은 귀농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문제' (35.1%), 귀촌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충돌' (32.6%)로 조사
 - ※ 갈등 요인(귀농/귀촌): 공동시설이용(35.1%/9.8%),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30.2/32.6), 집·토지 문제(14.3/24.6), 선입견과 텃세(12.5/15.8) 등
- [귀농귀촌 만족도]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귀농 67.2%, 귀촌 67.4%)가 귀농 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3가구(30.5%, 30.8%)는 보통, 불만족은 각각 2.3%, 1.8%
- [귀농귀촌 정책]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귀농 39.9%, 귀촌 39.8), 자금지원(귀농 농지·시설 자금 27.2 / 주택자금 16.0, 귀촌 13.5) 순

㉔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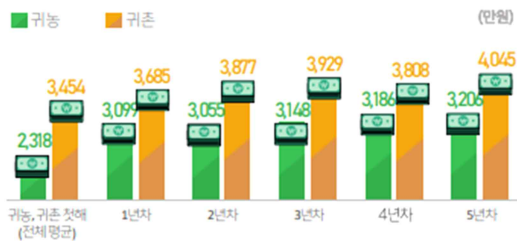
1 귀농귀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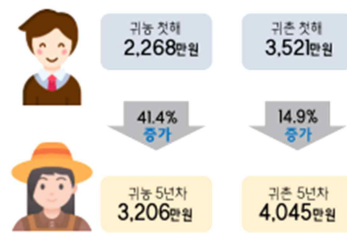
2 귀농귀촌 이유



3 귀농귀촌 가구 소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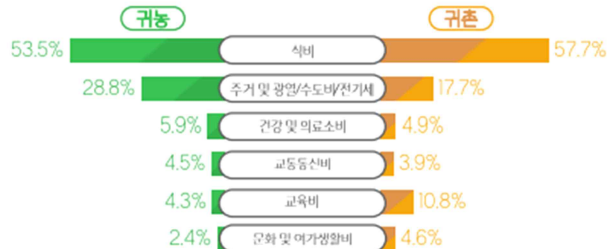
귀농·귀촌 5년차의 가구 소득 변화



월 평균 생활비



지출 항목



㉔ 통계·조사

4 경제 활동

귀농 가구의 농의 경제활동

농외 경제활동 수행 45.4%

농의 경제활동 수행이유

83.3% 소득을 더 올리려고

6.4% 내가 가진 재능·경력을 활용하고 싶어서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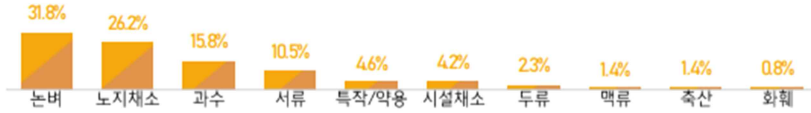
경제활동 수행 90.0%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종류



5 귀농가구 주소득 작목

주소득 작목



선택 이유



재배의 용이성 50.3%



높은 소득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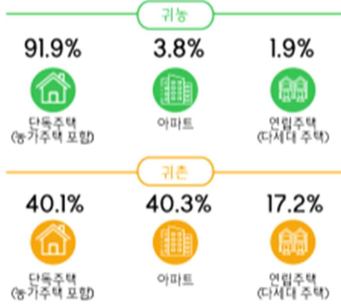
주변의 권유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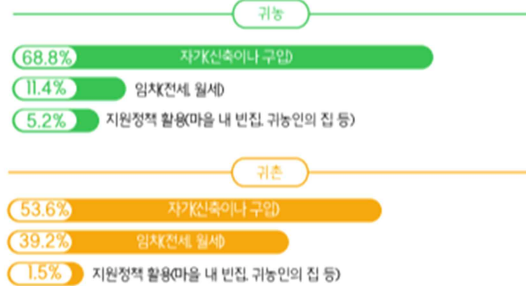
지역 특화작물 4.0%

6 주거

거주 주택 종류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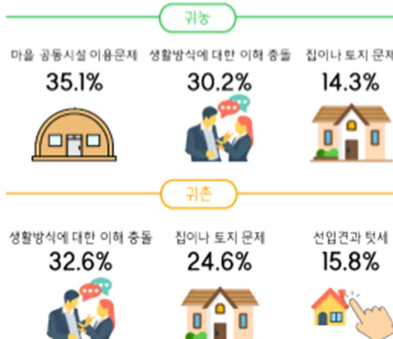


7 지역 융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좋지 않은 이유



8 귀농귀촌 만족도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3.2.27.)

□ 개요

- [통계청,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발표, 2023.2.27.]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경지 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작물 생산계획 수립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 경지면적조사: 2012년 최초로 원격탐사 방법을 실용화한 이후 2016년 농업면적조사 표본 개편을 통해 현장조사와 원격탐사를 혼합한 방식으로 조사·공표
 - ※※ (조사대상) 2019년~2020년에 실시한 경지총조사 결과를 경지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설계를 통해 추출된 약 32,000개 표본조사구 / (조사방법) 현장방문조사 및 위성 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 (조사기간) 현장조사...제5회 작물재배면적 조사기간(2022.11.11.~12.9.), 원격탐사...용역수행 기간(2022.5.16.~12.23.)

□ 조사 결과

- [2022년 경지면적] 1,528,237ha, 2020년 대비 1.2%(-19천 ha) 감소, 경지면적 중 논 면적 775,640ha(50.8%)와 밭 면적 752,597ha(49.2%)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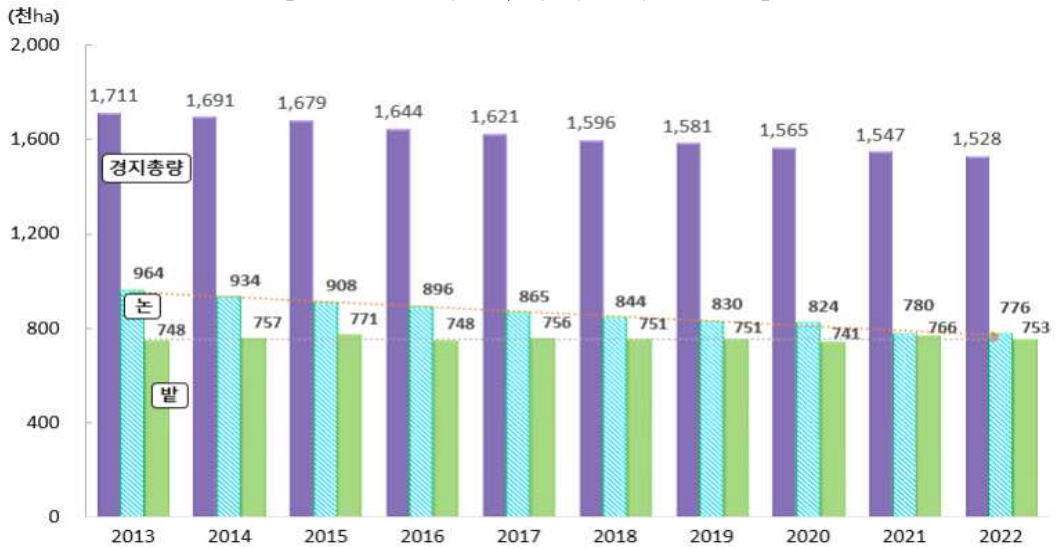
▮ 연도별 경지면적 및 증감률 추이(단위: 천 ha, %)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지 면적	계	1,698	1,730	1,711	1,691	1,679	1,644	1,621	1,596	1,581	1,565	1,547	1,528
	논	960	966	964	934	908	896	865	844	830	824	780	776
	밭	738	764	748	757	771	748	756	751	751	741	766	753
증감률		-1.0	-	-	-1.2	-0.7	-2.1	-1.4	-1.6	-0.9	-1.0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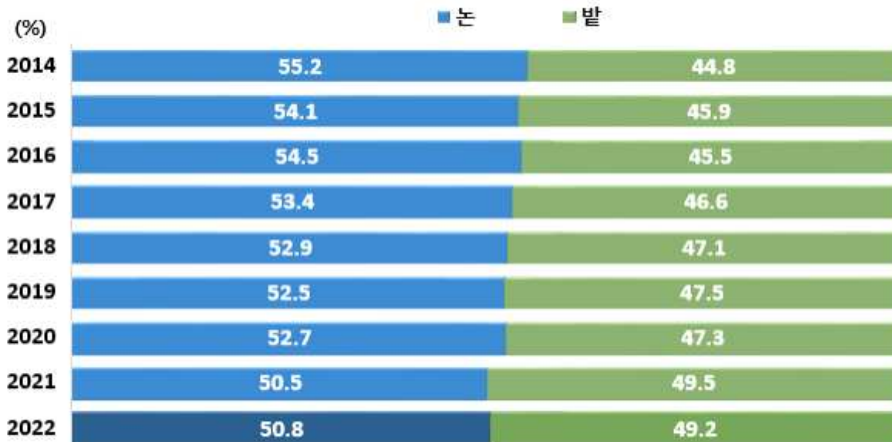
- (논 면적) 775,640ha, 2021년(780,440ha) 대비 4,800ha(-0.6%) 감소 / (밭 면적) 752,597ha, 2021년(766,277ha) 대비 13,680ha(-1.8%) 감소
- [시도별 경지면적*] 전남 277,095ha(18.1%) > 경북 246,429ha(16.1%) > 충남 215,693ha(14.1%) 순
 - ※ 2020년: 전남 28만 1천 ha(18.2%) > 경북 24만 9천 ha(16.1%) > 충남 20만 9천 ha(13.3%) 순
 - ※ 2021년: 전남 28만 1천 ha(18.2%) > 경북 24만 9천 ha(16.1%) > 충남 21만 7천 ha(14.1%) 순
- (논 면적*) 전남 165,770ha(21.4%), (밭 면적**) 경북 144,126ha(19.2%)
 - ※ 2022년 논면적: 전남 166천 ha(21.4%) > 충남 142천 ha(18.3%) > 전북 124천 ha(16.0%) > 경북 102천 ha(13.2%) 순
 - ※※ 2022년 밭 면적: 경북 144천 ha(19.2%) > 전남 111천 ha(14.8%) > 충남 74천 ha(9.8%) > 경남 72천 ha(9.5%) 순

㉔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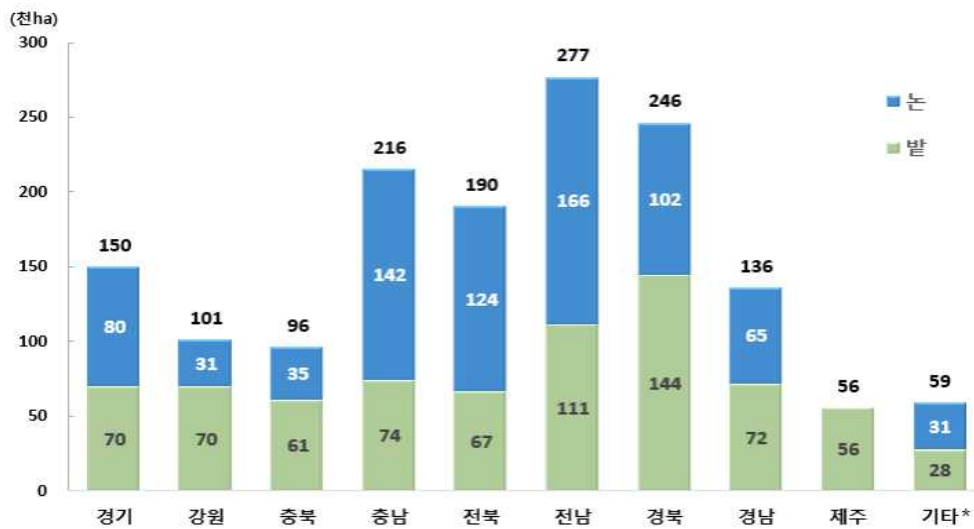
▮ 연도별 경지면적 추이(단위: 천 ha) ▮



▮ 연도별 논밭별 경지면적 변화(단위: %) ▮



▮ 2022년 시도별 논밭별 경지면적 현황(단위: 천 ha) ▮



※ 기타: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3.2.28.)

☐ 개요

- [통계청,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2023.2.28.] 북한 통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북한지역 벼 재배면적 통계제공을 통한 대북 농업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북한 벼 재배면적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15,470개 표본조사구 / (조사 방법) 2022년 5월~9월 기간 중 촬영된 위성영상

☐ 조사 결과

-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 539,679ha, 전년(544,006ha) 대비 0.8%(4,327ha) 감소, 2022년 남한 벼 재배면적(727,158ha)의 74.2%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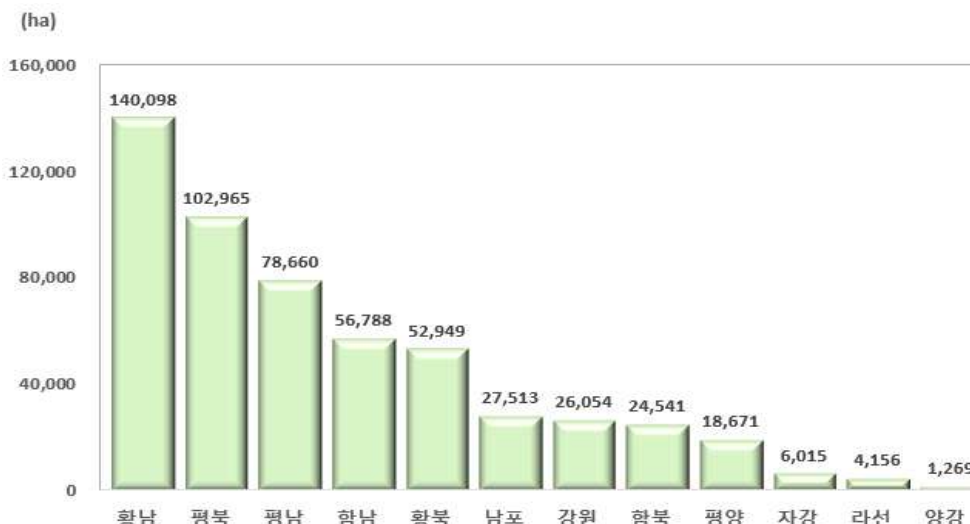
▮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A)	2022(B)	증감(C=B-A)	증감률(C/A)
벼	557,016	540,697	544,006	539,679	-4,327	-0.8

- [시도별 벼 재배면적*] 황해남도 140,098ha(26.0%) > 평안북도 102,965ha(19.1%) > 평안남도 78,660ha(14.6%) 순

※ 2020년: 황해남도(141,260ha, 26.1%) > 평안북도(103,867ha, 19.2%) > 평안남도(78,703ha, 14.6%) 순

※ 2021년: 황해남도(142,004ha, 26.1%) > 평안북도(103,420ha, 19.0%) > 평안남도(78,962ha, 14.5%) 순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소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